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49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 장소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5.10.21.시행)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하여 정함(안 제1조)

- 상위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여, 상위법령과 독립된 별도의 자체적인 목적이 있는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령을 원활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위임조례라는 것을 명확히 함.

나.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조례로 위임된 영업장소와 신고서류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공연·전시·도서시설 등의 문화시설,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지역행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8. 01. ~ 8.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